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본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일임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일 : . . .

수령인 : (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 (인)

(주)매트릭스투자자문

1. 회사개요

- 대표이사 : 곽상준
- 주요사업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 자 본 금 : 24억
- 최대주주 : 곽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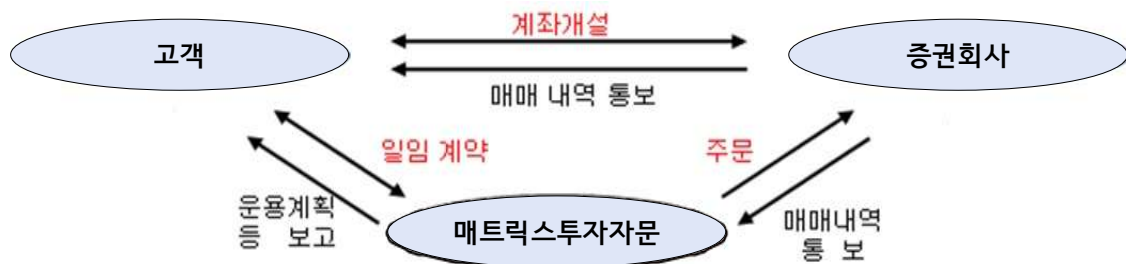
2. 금융위원회 등록번호 : 금융위원회 시행 자산운용과-1067

3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 투자일임의 범위 : 국내외 경제분석 및 증권 가치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일임업무 그리고 증권의 매매구분,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업무 일체.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운용에 반영해야 함.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일임업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
- 투자대상 : 자본시장법 제4조에 의한 증권 등의 범위 또는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증권 및 운용조건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협의 한 것
- 자산배분
 -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단,파생ETF제외) : 0 ~ 100%
 - 2) 해외주식, 미국 주요 거래시장과 중국 주요 거래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 : 0 ~ 100%
 - 3) 국내외 채권 : 0 ~ 100%
 - 4) RP 및 예수금 등 현금성자산 : 0 ~ 100%
- 투자위험 : 2009.02.04.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본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은 "1등급(가장높은위험)으로 총(6)단계 중 (1)번째 높음" 따라서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 형이상인 고객에게 적합.

4.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 업무수행 기준 :



5. 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현황 : 별지 1 참조

- 당사 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관련 법률상의 위법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

6.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별지 2 참조

7. 투자자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 투자일임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보
-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대상 유가증권과 동일한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실적 및 잔액을 투자자에게 통보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주기적 점검보고서 작성

8. 고객과 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고객 성향 등 사전파악** :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운용
-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 회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다만, 투자일임담당자가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후 통보할 수 있음
- **비밀유지 의무**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함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

-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및 위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 ③ 고객에게 제삼자의 금전 및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④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 운용 행위제한** :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단, 고객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법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② 투자자문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③ 투자자문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하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④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투자자문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⑥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
- ⑨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유상증자의 청약은 허용

○ **통지의무 및 통지사항**

- ① 고객의 거래증권회사와 점포 및 계좌번호, 우편물 기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유선,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 ②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상기 내용에 변경이 있음에도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투자일임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 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문사에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

9.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일임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됨.
 - ① 기본수수료: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② 성과보수(수수료):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과 정한 "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약정서"에 따라 산정함.

10.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만료 또는 해지 하는 경우 각 시점의 투자일임재산 형태는 현금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함.
- 미수사용 없이 현금 100%로만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금율은 100%로 설정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11.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및 투자실적 평가

-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 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일임재산을 평가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점의 투자실적의 평가** :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하며,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하여 계산

12. 투자결과 통보 방법

-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투자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단, 고객이 사전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하며, 투자결과와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②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
 - ③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④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13. 투자권유의 업무 위수탁

- 수탁회사와의 투자권유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수탁한 회사에게 지불 가능

14. 위험 및 유의사항

-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 매매거래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음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으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주가상승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고객 요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일부출금)시 보유자산을 시장가격에 매도함에 따라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성과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가 없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본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고객은 투자 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면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함.

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주)매트릭스투자자문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대표이사	곽상준	매트릭스투자자문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CIO	정진만	매트릭스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 신한투자증권 PB팀 팀장	
운용책임력	최현수	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	
운용책임력	이윤희	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	
운용책임력	김가은	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	

회사 주요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최대주주와 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합 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곽상준	최대주주	65,476	21.36%			65,476	21.36%
최경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912	0.95%			2,912	0.95%
(주)우산과 소금	주요주주	41,667	13.6%			41,667	13.6%
권순장	주요주주	17,857	5.83%			17,857	5.83%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비고
곽상준	대표이사		
서준식	비상임이사	이사회회장	
한선욱	비상임이사		
황인선	상임이사	경영총괄	
권순장	감사	감사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징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 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신청절차

- 계약시 상담직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내역 통보

-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 통보대상 제외

-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